

고 소 장

고소인 0 0 0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전화번호: 000 - 0000

피고소인 △ △ △

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전화번호: 000 - 000 - 0000

위 피고소인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사 실

- 1.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고, 피고소인은 이건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○○경찰서 ○○파출소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.
- 2. 그런데 고소인은 20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에서 택시승객인 고소외 □□□로부터 택시요금문제로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을 당 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.
- 3. 이에 고소인은 위 □□□를 붙잡고 즉시 관할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소인 이 출동하였으나 위 □□□와 이웃지간으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은 위 □□□의 계속된 폭력행사를 제지하기는 커녕 "당신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여 발생한 문제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, 별 문제도 아닌데 귀찮게 112신고를 한다. 바쁜 일이 있다"하면서 범죄현장을 일탈하였습니다.
- 4. 피고소인은 사회질서와 안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경찰관 으로서 범법자인 위 □□□를 적극 검거하여 정식 입건절차를 밟거나 상사에

게 보고하지 아니하고, 폭력현장을 일탈하여 무고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생 석·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.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결국 피 인은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을 하면서, 객관적으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.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고 소 인 〇 〇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			<u>'</u>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론 xx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122조
범죄성립 요 건	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		
형 량	·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· 3년이하의 자격정지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 (항고) ・근거: 검찰청법 10조 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(재정신청) 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 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(헌법소원) 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 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